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의안 번호	관련 230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6. 22.
제출자 : 김영진 위원

1. 수정이유

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로만 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이 없게 되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적용하고,
부칙안이 “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로 할 경우 지방세법과 조례간에 재산세 과세 표준 적용 시점이 상이하여 제21조제1항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과세기준일 2006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

2. 주요내용

- 안 제21조제1항 중 “법 제111조제2항제1호”를 “법 제11조제2항”으로 수정
- 부칙 제1조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 단, 제21조제1항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과세기준일 2006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”로 수정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

제21조제1항 중 “법 제111조제2항제1호” 를 “법 제11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부칙 제1조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 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단, 제21조제1항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과세기준일 2006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” 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1조(과세표준)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비율을 산정한 가액을 법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21조(과세표준) ①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</p>	<p>제21조(과세표준) ①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</p>
<p>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u>단, 제21조제1항 개정규정과</u> <u>부칙 제2조는 과세기준일</u> <u>2006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</u> <u>적용한다.</u></p>